SEEKING FOR THE BEST

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 국회 의결

Mar 16. 2026

공인노무사 황 지 호
공인노무사 서 강 준

노동법률자문/인사노무컨설팅/경영지도

개요

1. ’26. 2. 12. 및 3. 12.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국회 의결

- **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(제정)**
- **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**
- **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**
- 단, 상기 법률들은 아직 공포 · 시행되지 않았음.

2. 각 법률의 제 · 개정 취지(목적)는 다음과 같음.

- **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**

  - 개별 법률에 산재된 **근로감독관의 직무 및 권한**을 통일적으로 규율

- **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**

  - **다단계 하도급 구조**에서 반복되는 **구조적 임금체불 문제**를 해결하고 처벌 실효성 강화

- **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**

  - **보험료 산정 기준** 변경

  - 근로복지공단이 **근로자의 국세소득 자료를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** 변경

1.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

(1) 제 · 개정 배경

- 개별 법률에 산재된 노동감독관(前 근로감독관)의 직무 및 권한을 통일적으로 규율
- 또한, 현재 고용노동부 및 소속기관의 인력만으로 사업장 감독에 한계가 있으므로,
  실효적 감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감독권한을 부여하기 위함임.

(2) 주요 내용

- **제1조 내지 제4조**
  - 고용노동부 소속 '**중앙노동감독관**'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'**지방노동감독관**'을 구분하여 정의
- **제6조 내지 제15조**
  - **중앙노동감독관의 직무 · 권한 등**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
- **제15조 내지 제19조**
  - 사업장 감독의 종류, 감독 계획 수립, 결과 조치 등 **사업장 감독에 관한 업무 절차** 규정
- **제20조 등**
  - 신고사건의 제기 · 조사 · 결과 조치 등 **신고사건 처리 절차**를 규정
  - **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집행 원칙** 구체화

2.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(1) 제 · 개정 배경

-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 내 근로감독관 관련 조항을 삭제 · 수정
- 임금체불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임금체불 억제효과 증진
- 도급인이 공공기관 등에 해당하는 경우, 특정 업종, 규모, 기간의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구분하여 매월 지급해야 함.

(2) 주요 내용

- **제13조, 제101조 등**

  -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 제정에 따라 **근로감독관 관련 조문을 삭제 · 수정**

- **제107조, 제109조**

  - **임금체불 관련 법정형**을 현행 **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**에서 **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**으로 상향

- **제44조의4 (신설)**

  - **공공기관**, **지방공사 및 지방공단**, **지방자치단체 출자 또는 출연기관**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**업종, 금액 규모 및 기간의 사업**을 도급하는 경우 그 도급금액 중 수급인이 **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**에 해당하는 비용을 구분하여 **매월 지급**해야 함.

3.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

(1) 제 · 개정 배경

- 종래 사업주가 근로자의 소득 자료가 포함된 국세신고와 별개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 · 산재 보험료 산정을 위한 근로자 보수를 따라 신고하는 불편이 있었음.
- 이에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국세소득 자료를 고용 · 산재보험료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.
- 보험료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정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험료 산정 기준 변경

(2) 주요 내용

- **제13조, 제16조의3, 제16조의5 등**

  - **보험료 산정기준**을 전년도 월평균보수에서 **해당 연도 해당 월 보수**로 변경

- **제16조의6**

  - 사업주가 공단에 **근로자의 보수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** 국세청 등 **유관에 신고한 사실**을 바탕으로 **공단이 조사하여 산정한 금액을 월별보험료로 산정 가능**

시사점

※ 본 이슈레포트의 개정안들은 아직 공포 · 시행되지 않았으나, 시행 시 아래와 같은 시사점이 예상됨.

1. 근로감독의 빈도 및 범위 확대

- 노동감독관의 직무집행 근거가 마련되고, 감독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위임되어 종전보다 사업장 감독의 빈도와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.
- 특히 소규모 사업장 감독 부담이 적어져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감독은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장에 집중될 것으로 사료됨.
- 따라서, 각 사업장의 노동관계법령 준수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· 개선하실 것을 권고드림.

2. 고용 · 산재보험료 업무 처리 시 편의성 증대

- **근로복지공단**이 국세청 등 **유관기관의 자료를 활용할 근거를 마련**하여 **고용 · 산재 보험료 업무 수행 시 편의 증진**이 기대됨.